

작성요령

1. ⑥란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기재합니다.

가.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: 그 출자액

나.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: 그 투자액

다.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: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

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×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/
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

2. ⑧란에는 당해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70/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.

